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5555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진필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636,332원 및 그중 239,881,412원에 대하여 2021. 7. 24.부터 2022. 4. 20.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8. 3. 1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23. 3. 13.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 1) 피고 B은 2019. 12. 2.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8,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 2. 피고 C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본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5. 29.자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 6,0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0. 3.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위 같은 날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억 7,7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대위변제금 잔액 등

- 1) 피고 회사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21. 7. 23. D에게 대출금 241,762,322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 1,880,91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2021. 7. 23.을 기준으로 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239,881,412원(= 241,762,322원 - 1,880,910원)이다.
- 3)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율은 2020. 6. 1.부터는 연 8%이다.
- 4)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754,920원이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합계 240,636,332원(= 2021. 7. 23. 기준 대위변제금 잔액 239,881,412원 +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잔액 754,92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7,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억 8,7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은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과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합계 240,636,332원(= 2021. 7. 23. 기준 대위변제금 잔액 239,881,412원 +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잔액 754,92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239,881,412원에 대하여 2021. 7.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2. 4. 20.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등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2019. 12. 2.)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2018. 3. 14.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으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G의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 B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4.경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공공정보) 등록이 이루어진 점, ③ 또한, 피고 회사는 2019. 10. 30.까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25,692,990원을 체납하였고, 그 이후로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계속 체납한 점, ④ 2021. 4. 17. 무렵 피고 회사가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호증의 3 사고일자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21. 7.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자의 무자력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비롯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 B의 무자력 상태는 변론종결일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적극 재산	이 사건 부동산	387,000,000원
소극 재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7,000,000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40,636,332원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과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 C은, ① 자신은 오랜 외국생활을 마치고 2018. 6.경 귀국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B의 채권·채무관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존재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매수한 점, ③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21. 4. 6.경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을 들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인 점, ②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2. 9.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을 그대로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억 1,700만 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억 8,7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E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억 7,000만 원(= 3억 8,700만 원 - 2억 1,7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오영, 판사 이지희, 판사 김은집

별지